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8
----------	-----

2023년 6월 23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3년 5월 30일
- 다. 회부일 : 2023년 6월 1일
- 라. 상정일 :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2023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운영
-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추정개요

1) 추정예산 : 2,577,908천원

- 지정 출연금액 : 29,618,652천원, 총 출연금액 : 32,196,560천원

2) 출연금 편성 내용

- DDP 자체수입 손실분 충당 : 967,908천원(DDP 시설관리 및 시

설관리인력 운영비 지원)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수입 손실분 보전 : 598,984천원
- 시 무상사용 대관수익 감소 초과분 보전 : 278,705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임대수익 감소분 보전 : 90,219천원
- 디자인랩 1,2층 재구성에 따른 콘텐츠 이전·구축 : 700,000천원
- DDP 디자인스토어 이전 및 구축 : 500,000천원
- 디자인랩 1~2층, 운영사무실 이전 및 구축 : 200,000천원
- DDP 10주년 맞이 재도약을 위한 리브랜딩 : 200,000천원
- 야외 수공간 설계 : 10,000천원
-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 70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으로 DDP 수입 창출 공간이 축소되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설관리비 부족분 598,984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
- 디자인랩 1,2층(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재구성에 따른 기존 콘텐츠 이전 및 구축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
- '23년 예산 편성 시 행정재산의 서울시 직접 사용(대관)에 대한 DDP 사용료 미징수로 대관수익 감소 보전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으나, 서울시 행사 증가로 대관료 초과분이 발생하여 자체수입 감소분에 대한 278,705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
- 코로나19관련 우리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에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감면한 임대 수익 손실분 90,219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

- '24년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DDP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이에 DDP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DDP 브랜드 개선 200,000천원 및 DDP 공원부 공간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심형 수변공간 설계비용 10,000천원을 추경 편성함
- '매력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홍보 하기 위한 예산 700,000천원 편성

다.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요)

- 1) 소재지 : 중구 을지로 281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65,232m²))
- 2) 규 모 : 총 면적 86,574m², 지상 4층, 지하 3층
- 3) 개 관 : '14. 3. 21
- 4) 전경 및 위치도



- 5) DDP 시설 현황 : 5개 공간

공간 명	면적 (m ²)	시설 및 용도
아트 홀	5,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디자인브랜드 행사, 패션위크 등 디자인패션 관련 행사, 국제컨퍼런스 등 ※ 아트홀1관(1,500석), 아트홀2관(1,000석), 컨퍼런스홀(200석)
뮤지엄	8,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디워홀, 팀버튼 등 글로벌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 등 ※ (B2) 전시1관, (2층) 전시2관, (B2~4층) 디자인둘레길
디자인랩	7,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D숲 - 시민휴식 및 기획전시, DDP 스토어 - 소상공인 176개 입점 • 2층) 서울-온(2층) - 市 화상 스튜디오, 오픈라운지 - 멤버십 공간 • 3층) 디자인 쇼룸 - 유니버설디자인, NFT 갤러리 매거진 라이브러리 - 디자인패션 서적 구비 등 디자인 라키비움 • 4층) 잔디사랑방 - 중·소규모 행사
DDP 마켓	5,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heB(SBA 운영), 식음료 매장 및 동대문 상권 팝업스토어
공 원	4,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서울 쇼룸, 갤러리문 전시장(해외대사관 및 문화원 협력 전시 등) • 동대문역사관·동대문운동장기념관(한양도성박물관 운영)

4.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 방침

- 1) 첨단 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행정1부시장 제67호, '23.4.10.)
-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7차)(재산관리과-2816, '23.3.9.)
 -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40% 감면 추진 요청

다 . 예산조치 : 2023년도 1차 추경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동의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3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의 <DDP 자체수입 손실분 충당>, <DDP 디자인랩 1,2층 재구성에 따른 콘텐츠 이전·구축>, <DDP 10주년 맞이 재도약을 위한 리브랜딩>, <DDP 야외 수공간설계>,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사업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1) DDP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

- 이번 출연금 추경예산으로 ‘DDP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금’ 총 9억 68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동일한 예산구조로, 먼저 사업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을 편성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 재단은 지속적인 관리사업 수익 창출을 반영하여 '23년 본예산 편성시 목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표 세입예산액을 수립하였음. 그러므로 DDP 자체수입의 감소는 '23년도 계획사업 추진 및 DDP 시설 유지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단은 관리사업수익의 많은 부분이 대관 및 임대 수익을 포함한 인프라 운영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대관 및 임대 수익 감소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 손실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DDP 목표 운영수입 >

(단위: 천원)

연번	운영수입 항목	수입액
합 계		12,834,000
1	서울디자인20203 입장권 및 부스 판매	150,000
2	대관수입	6,229,000
3	임대수입	4,830,000
4	주차수입	1,300,000
5	브랜드 수입(광고매체 판매, 멤버십, 브랜드 상품 판매수입)	245,000
6	콘텐츠 수입(자체기획 전시 입장료)	80,000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수입 손실분 >

- 'DDP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금' 중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분' 5억 99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최첨단 기술 기반 라이프스타일 확산을 위해 DDP 내 공간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전시공간'을 조성²⁾하고자 함.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디자인랩 1,2층 공간에 뷰티·패션 스마트 쇼룸 및 플래그십 스토어가 조성될 예정이며, '23.9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에 따

2) 첨단 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경제정책과-4320,2023.4.10.)

라 재단이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대로 디자인랩 1,2층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DDP 자체수입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하다 하겠음

- 디자인랩 1,2층 임대공간의 임대수입과 서울-온(화상스튜디오, 화상회의실)을 포함한 대관공간 수입이 감소하고, 현재 디자인랩 2층에 위치한 멤버십 혜택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신규 유료 멤버십 회원모집이 불가하여 브랜드 수입 또한 감소하게 됨. 또한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으로 유료전시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재단이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추진 예정이었던 유료전시를 무료전시로 변경 개최하게 되면서 콘텐츠 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DDP 운영 수입손실분이 발생하여 해당비용 보전분을 요구하는 것임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DDP 운영수입 손실 >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세입목표		감 소 액
	당 초	변 경	
합 계	12,684,139	12,085,155	△598,984
대 관	6,229,139	6,058,557	△170,582
임 대	4,830,000	4,509,598	△320,402
브 랜 드	245,000	217,000	△28,000
콘 텐 츠	80,000	-	△80,000

< 시 무상사용 대관수익 감소 초과분 >

- ‘DDP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금’ 중 ‘시 무상사용 대관수익 손실 초과분’ 2억 79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재단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재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DDP를 직접사용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대

상에 해당되지 않아 2023년부터 서울시 각 부서가 DDP를 사용(임대·대관 모두 포함)하는 경우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DDP 운영수익을 하향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증액한 바 있음

※ 서울시의 DDP 사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기획조정실 검토 결과)

- 그간 DDP의 100% 재정자립 기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DDP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해왔음. 그러나 「공유재산법」제2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소속 부서에서 DDP를 사용(대관 임대 모두 포함)하는 경우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DDP 운영수익을 하향 조정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2023년도 본예산 편성시 2022년도 서울시 직접 주최 행사 대관료를 기준으로 대관수익 손실보전비용을 예측하였으나 반영된 손실보전분에 비해 2023년도 서울시 직접 주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대관료 수익 손실보전비용 2억 79백만 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출연금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출연금 규모	35,881,827	20,975,489	23,287,148	29,618,652

※ 재단 예산서 기준 출연금 규모. 2020년까지는 재단 사무로 패션사업이 포함되었으나 2021년 패션사업의 경제정책실 이관으로 출연금 규모 축소

〈 DDP 대관료 수익 손실 추가 보전 비용 〉

(단위: 천원)

연번	행사명	대관	담당부서
1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	5,354	브랜드기획팀
2	2023 춘계 서울패션위크 홍보영상 촬영	14,300	패션산업팀
3	2023 춘계 서울패션위크	498,742	패션산업팀
4	2023 춘계 서울패션위크	102,483	패션산업팀
5	2022 넥스트로컬 4기 투자대회 및 성과공유회, 포럼	13,150	대외협력과
6	서울시 평생교육 행사	37,340	평생교육과
7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47,387	양성평등일자리팀
8	해커톤 행사	77,091	디지털수석
9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	41,074	문화정책과
10	2023 추계 서울패션위크	408,061	패션산업팀
11	2023 서울뷰티위크	223,629	뷰티산업팀
12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39,578	국제정책팀
13	서울 국제 디지털 금융페스티벌	146,725	디지털금융팀
14	서울시 일자리정책 행사	102,685	일자리정책과
15	2023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2,314	교류기반조성팀
16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	9,653	안심소득추진과
'23년 서울시 개최 행사 대관료 보전분 합계 (①)		1,769,566	
'23년 본예산 편성시 대관료 보전분 합계 (②)		1,490,861	
대관료 수익 손실 추가 보전분 (②-①)		278,705	

〈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임대수익 감소분 〉

- 'DDP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임대수익 감소분' 90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중앙정부³⁾ 및 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장 추진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6개월 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지원방안(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7차⁴⁾)을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DDP 내 임차 소상공인 상반기(2023년 1~6월) 임대료 감면 지원 보전 대상 업체 총 9곳에 대하여 90백만원의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다만, 이는 '23.5월 기준 추산액으로 '23.8월 업체별 매출신고액 확정 결과에 따라 임대료 감면액은 변경될 수 있음

3) '23.12월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4)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7차) (재산관리과-2908, '23.3.10.) -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40% 감면

< DDP 임대료 감면 지원 보전 예정 비용 >

구분	공간	호수	임차인	감면율	감면총액(천원)
합 계				-	90,219
1	디자인랩	C6	티티알1(디자인숍)	40%	8,140
2		C5	티티알2(디자인숍)	40%	4,375
3		C3	피니셔클럽1(디자인숍)	35%	4,752
4		C2	피니셔클럽2(디자인숍)	35%	3,855
5	DDP마켓	C1	GS25(편의점)	40%	28,729
6		C4	롤링핀(베이커리)	40%	11,627
7		C6	빨라쥬 오타르(카페)	40%	4,130
8		C7	공차(카페)	40%	12,514
9		D4	델리커리(F&B)	40%	12,097

※ 업체별 지원액은 추산액으로 '23.8월 업체별 매출신고액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DDP 자체수입 손실분 종합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세입목표		① 시 공간조성	② 시 주최행사	③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
	기존	변경			
합계	12,684,139	11,716,231	△598,984	△278,705	△90,219
대관	6,229,139	5,779,852	△170,582	△278,705	-
임대	4,830,000	4,419,379	△320,402	-	△90,219
주차	1,300,000	1,300,000	-	-	-
브랜드	245,000	217,000	△28,000	-	-
콘텐츠	80,000	-	△80,000	-	-

2) DDP 디자인랩 1,2층 재구성에 따른 콘텐츠 이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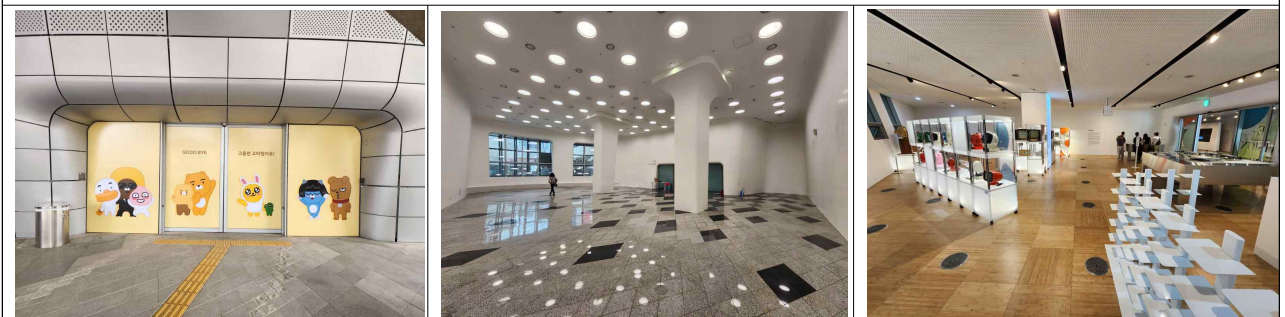
- 서울시의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정책과에서 스마트 쇼룸 등을 운영하기 위해 DDP 내 디자인랩 1,2층 공간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랩 1,2층 공간의 원상복구와 기존 설치물

등을 이전하기 위한 예산 7억 원이 증액요청됨

- 현재 디자인랩 1층에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운영되는 오픈라운지인 'D-숲'과 'DDP 디자인스토어', '미디어아트갤러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2층에는 '서울-온(화상스튜디오, 화상회의실)'과 회의실, 오픈라운지 및 북세미나실 등 멤버십 혜택 공간과 대관·임대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제정책과의 스마트쇼룸 조성 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23.7월 중 공간설계 후 기존 콘텐츠 이전 및 구축하는 일정으로, 디자인랩 1층에서 운영 중인 'DDP 디자인스토어'는 디자인랩 지하 2층 일부 공간(카카오스토어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공실)과 디자인랩 기획전시실로 새롭게 이전하고, 'DDP 디자인스토어' 상품 이전 및 오픈이벤트 개최를 위한 예산과 디자인랩 1,2층의 오픈라운지 및 사무공간 원복·이전 등에 총 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현 DDP디자인스토어



DDP 디자인스토어 이전공간 대상(안)



디자인랩 1,2층 설치물 등 이전 검토 대상

3) DDP 10주년 맞이 재도약을 위한 리브랜딩

- 2024년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브랜드를 점진 및 개선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자 DDP 리브랜딩(rebranding)⁵⁾ 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이 증액요청됨
- DDP는 '14.3.21일 개관하여 각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발표회,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으며, 디자인 트렌트가 시작되고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로서 디자인·패션산업의 발신지⁶⁾의 역할을 표방하고 있음. DDP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건축물 그 자체로도 서울의 디자인·건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지난 10년간 DDP는 연간 천 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의 디자인 성지이자, 뉴욕타임스 선정 “꼭 가봐야 할 세계명소”로 선정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와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 DDP 방문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개관 10주년을 맞아 DDP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

5) 리브랜딩(rebranding)이란? 소비자의 기호, 취향,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을 일컫음

는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브랜드 진단과 브랜드 정체성 점검을 통해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DDP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제시하여 DDP 고유의 정체성을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4) DDP 야외수공간 설계

-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야외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 분수 조성 설계와 사전준비 예산으로 10백만 원을 증액요청함. 이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특화분수 설치 검토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수공간 구축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DDP가 ‘나 홀로 멋진 랜드마크’가 아닌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친근하게 방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DDP 야외 수공간 조성은 외부공간의 활용도 증대 및 시민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이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전검토,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을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식 및 예산편성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규모가 내실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에는 과소 책정되었다고 사료됨

5)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 재단은 그간 ‘DDP 디자인스토어’ 운영과 디자인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브랜드담당관과 협업하여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과 서울시 홍보를 위한 디자인 상품 제작에 6억 원, 캐릭터 홍보 및 활용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과 SNS 바이럴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에 1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요청함

- 굿즈(Goods)란 상품, 제품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 ‘goods’에서 유래한 말로 브랜드 또는 캐릭터 등을 활용해 만든 각종 소품을 뜻함. 굿즈는 상품관측을 위한 증정품으로 기획되었으나, 최근에는 본 상품을 뛰어넘어 중요한 브랜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마케팅·도시브랜딩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대 ‘I♥NY(미국, 뉴욕)’, ‘I Amsterdam(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같이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브랜딩에 이어 최근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도시마케팅·도시브랜딩에 활용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큐슈 쿠마모토현의 ‘쿠마몬’과 독일 베를린시의 ‘버디베어’ 등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사례가 있음. 일본 ‘쿠마몬’은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로, 캐릭터와 굿즈를 통해 도시인기도 상승과 더불어 2017년 한해 1조 4,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함. 소도시 쿠마모토현의 해외관광객이 2배이상 증가하였고, ‘쿠마몬’은 여러 상품과 특산품에 활용될 뿐만아니라 SNS상에도 널리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서울 굿즈 개발 및 이



일본 '쿠마몬'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

벤트를 통해 서울 도시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도시마케팅 효과를 강화하고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함

- 재단의 주요 사업은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디자인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서울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서울의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을 위한 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 종합의견

- 재단은 DDP 운영사업의 100% 재정자립 기초를 폐지한 바 있고 그럼에도 재단은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높은 목표 세입액을 수립하여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 직접 추진행사 증가로 인한 대관료 감면,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대관 및 임대 수입 손실분 발생 등은 재단의 노력과 무관하게 재단의 연간 운

영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고 '23.6월을 기점으로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있음에 따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은 점차 완화되어 추후 지원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서울시 직접 주최행사 무료 대관에 따른 임대·대관료 손실과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라 재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분은 향후 2024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대해 재단은 장기적인 DDP 운영방안과 수익 창출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DDP가 단순히 임대·대관의 공간이 아니라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활용해야 할 것임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단은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DDP의 운영은 재단의 고유사업임. DDP는 건축물 자체로서 서울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이며 디자인트렌드가 시작되고 문화가 교류하는 장소로서 '디자인·패션산업의 발신지'의 역할을 하는 장소성을 가진 곳으로 재단은 이러한 DDP 정체성을 유지하며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재단은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고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임대사용료를 직·간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단의 재정독립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DDP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에 걸맞은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2024년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DDP 역할의 재정립과 브랜드 정체성 개선 및 혁신적인 외부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 동의안

의안 번호	898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3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 출연 여부에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운영
-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추정개요

1) 추정예산 : 2,577,908천원

- 지정 출연금액 : 29,618,652천원, 총 출연금액 : 32,196,560천원

2) 출연금 편성 내용

- DDP 자체수입 손실분 총당 : 967,908천원(DDP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인력 운영비 지원)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수입 손실분 보전 : 598,984천원
 - 시 무상사용 대관수익 감소 초과분 보전 : 278,705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 임대수익 감소분 보전 : 90,219천원
- 디자인랩 1,2층 재구성에 따른 콘텐츠 이전·구축 : 700,000천원
 - DDP 디자인스토어 이전 및 구축 : 500,000천원
 - 디자인랩 1~2층, 운영사무실 이전 및 구축 : 200,000천원
- DDP 10주년 맞이 재도약을 위한 리브랜딩 : 200,000천원
- 야외 수공간 설계 : 10,000천원
-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 마케팅 : 70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으로 DDP 수입 창출 공간이 축소되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시설관리비 부족분 598,984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
- 디자인랩 1,2층(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재구성에 따른 기존 콘텐츠 이전 및 구축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필요
- '23년 예산 편성 시 행정재산의 서울시 직접 사용(대관)에 대한 DDP 사용료 미징수로 대관수익 감소 보전분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으나, 서울시 행사 증가로 대관료 초과분이 발생하여 자체수입 감소분에 대한 278,705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
- 코로나19관련 우리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에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감면한 임대 수익 손실분 90,219천원을 출연금으로 보전
- '24년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DDP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이에 DDP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DDP 브랜드 개선 200,000천원 및 DDP 공원부 공간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심형 수변공간 설계비용 10,000천원을 추경 편성함
- '매력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 굿즈 및 특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홍보 하기 위한 예산 700,000천원 편성

다.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요)

- 1) 소재지 : 중구 을지로 281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65,232㎡))
- 2) 규 모 : 총 면적 86,574㎡, 지상 4층, 지하 3층
- 3) 개 관 : '14. 3. 21
- 4) 전경 및 위치도



5) DDP 시설 현황 : 5개 공간

공간명	면적(㎡)	시설 및 용도
아트홀	5,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 디자인브랜드 행사, 패션위크 등 디자인-패션 관련 행사, 국제컨퍼런스 등 ※ 아트홀1관(1,500석), 아트홀2관(1,000석), 컨퍼런스홀(200석)
뮤지엄	8,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디워홀, 팀버튼 등 글로벌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 등 ※ (B2) 전시1관, (2층) 전시2관, (B2~4층) 디자인둘레길
디자인랩	7,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D-숲 - 시민휴식 및 기획전시, DDP 스토어 - 소상공인 176개 입점 • 2층) 서울-온(2층) - 市 화상 스튜디오, 오픈라운지 - 멤버십 공간 • 3층) 디자인 쇼룸 - 유니버설디자인, NFT 갤러리 매거진 라이브러리 - 디자인-패션 서적 구비 등 디자인 라키비움 • 4층) 잔디사랑방 - 중소규모 행사
DDP 마켓	5,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heB(SBA 운영), 식음료 매장 및 동대문 상권 팝업스토어
공 원	4,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서울 쇼룸, 갤러리문 전시장(해외대사관 및 문화원 협력 전시 등) • 동대문역사관-동대문운동장기념관(한양도성박물관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 방침

1) 첨단 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행정1부시장 제67호, '23.4.10.)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7차)(재산관리과-2816, '23.3.9.)

-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40% 감면 추진 요청

다 . 예산조치 : 2023년도 1차 추경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미화(☎ 2133-2708)